

# 환경마크를 국제적 제품환경성기준의 척도로 육성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강화

앞으로는 전기·전자제품은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환경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대상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등 전기·전자제품 16개,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 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개, 벽지 등 주택·건설 자재 2개,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 제품 및 기타 제품 4개이다.

금번 전기·전자제품 인증기준 개정의 핵심은 환경마크 인증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반영함으로써 환경마크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환경마크제도를 국제적인 제품의 환경성규제 기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인 납·카드뮴·수은·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는 내년 7월 발효되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는 물질이다.

제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도 필요로 함에 따라, 친환경 부품·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Eco-SCM)'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기준에서는 Eco-SCM 구축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유해물질의 적합성 검증시험을 Eco-SCM 관련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망(Eco-SCM) 구축을 유도·지원하게 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건축·건설 자재 관련 인증기준에서는 제품 환경성 개선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나 정부 정책을 연계·반영했다. 이를 통해 법률별·정책별로 상이한 방식의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벽지, 층간 소음 방지재 등 건축 자재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연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과 '층간소음'을 항목에 반영했다.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반영했다.

## 전략물자 관련 「제도 이행 계도기간 운영」 안내

■ 산업자원부에서는 '05. 2. 17일, 무역센터에서 「전략물자 시스템」 개통 및 「전략물자 제도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악된 1종 전략물자 200여개 품목의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반사실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하였다.

### ■ 1종 전략물자 판정

-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공고」 제6조에 따라 수출자는 수출품이 1종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자율적으로 판단
- \* 판정에 애로가 있으면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로 문의 (Tel. 6000-5251~3)
- 확인결과, 1종 전략물자 생산, 수출업체는 최근 5년간 자사의 수출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 계도기간 : 2005. 2. 18 ~ 2005. 6. 30

### ■ 이행계획서 제출

(www.gokea.org 및 www.sec.go.kr 알림마당 참조)

- 과거 5년간 1종 전략물자를 허가받지 않고 수출했을 경우, 당해 업체 대표는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로 제출

(Tel. 02-2110-5343~4 / Fax. 02-503-9438)

### ■ 향후 조치계획

- 관용조치 시스템에서 1종 전략물자로 자체 판정하고 그동안에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이행 계도기간중에 추가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행결의대회」에 준하는 회사대표의 이행의지 확인과정을 거쳐 과거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관용조치 단, 이미 수출한 물품이 국제적인 우려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취소하고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
- 계도기간 후 위반업체 적발 및 처벌